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83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831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50885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강명훈

변론종결 2022. 8. 17.

판결선고 2022. 9.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50885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1.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66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3.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1. 7. 접수 제2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별지